

1.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규정 제2025-001호][시행 2025. 7. 1][일부개정 2025. 2. 28]

2007년	7월	3일	제정
2008년	1월	9일	개정
2008년	2월	13일	개정
2008년	4월	28일	개정
2008년	11월	25일	개정
2010년	2월	8일	개정
2010년	12월	9일	개정
2011년	2월	10일	개정
2011년	12월	6일	개정
2013년	2월	7일	개정
2013년	12월	10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14년	12월	3일	개정
2015년	11월	10일	개정
2016년	8월	1일	개정
2016년	12월	7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7년	12월	11일	개정
2020년	11월	3일	개정
2021년	6월	29일	개정
2021년	12월	2일	개정
2022년	9월	1일	개정
2023년	9월	26일	개정
2024년	5월	9일	개정
2025년	2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용요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 및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공제”라 한다) 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용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5.>

1. “소기업·소상공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11.10.>
2. “계약”이라 함은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부금을 납부할 것과 중소기업중앙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제29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4.28.>
3. “계약자”라 함은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4. “부금”이라 함은 법 제117조제1호에 따라 계약자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금월액”이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납부할 부금액을 말한다.
6. 삭제 <2008.4.28.>
6. “부금납부월수”라 함은 부금의 납부를 마친 월수를 말한다. 다만, 부금의 해당 월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한 부금의 월수를 제외한다. <호변변경 2008.4.28.>
7. “부가공제기준일”이라 함은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을 말한다. <개정 2008.1.9.> <호변변경 2008.4.28.>
8. “부금납부기일”이라 함은 계약자가 부금월액을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납부 하기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8.1.9., 2008.4.28.> <호변변경 2008.4.28.>
9. “공제금”이라 함은 제29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28.> <호변변경 2008.4.28.>
10. “해약환급금”이라 함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호변변경 2008.4.28.>

11. “공제계약대출”이라 함은 중앙회가 법 제118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자에게 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호변변경 2008.4.28.>
12. “공제자산”이라 함은 공제사업 운영으로 조성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8.4.28.>

제3조(적용범위) ①공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운용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운용요강의 변경) 이 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1.>

제2장 공제자금의 조성과 사용

제5조(공제자금의 조성) 공제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계약자가 납부하는 부금
2.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를 위한 차입금
4. 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공제자금의 사용) 공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8.11.25.>

1. 공제금·해약환급금 및 반환금 등의 지급
2. 공제계약대출
3. 제43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자금운용 <개정 2008.4.28.>

4. 법 제115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5. 계약자를 위한 각종 편익 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신설 2013.12.10.>
6. 계약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조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 <신설 2014.12.3.>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3.12.10., 2014.12.3.>

제3장 공제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공제의 관리·운용) ①공제는 중앙회가 관리·운용한다. 다만, 그 운용 조직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이하 “공제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공제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공제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제운용계획) ①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제9조제1항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제운용계획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25.><개정 2017.12.11.>

②제1항의 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자금의 수입계획
2. 공제자금의 사용계획

제9조(공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중앙회는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4.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보험·금융·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이내

④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5.]<개정 2017.12.11.>

제10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①공제운영위원회는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운용요강 등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
2. 공제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공제자산운용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
4. 그 밖에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호변변경 2014.12.3.>

②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사전에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08.11.25.]

제11조(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①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 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공제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1.25.]

제4장 공제의 가입 및 해지

제1절 공 제 가 입

제12조(공제가입대상) ①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가입 당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6.12.7(시행일 2017.1.1)>.

1. 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개정 2008.4.28., 2010.2.8.>
2. 계약일 현재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
2. 법인의 대표자
3.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신설 2010.2.8.>

③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복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
2.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⑤제2항제3호의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 및 가입절차는 요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제13조(공제가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에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08.11.25.>

1.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앙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12.6.>
3.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기준에 의함)
<개정 2024.5.9., 2025.2.28.>

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나. 무도장 운영업(91291)

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라. 카지노 운영업(91242)

마. 유사 의료업(86902)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제14조(계약의 청약 및 승낙) ①계약의 청약을 하는 자는 부금월액을 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청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청약금은 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의 부금으로 충당한다.

③중앙회가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중앙회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을 계약일로 보며 그 날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중앙회가 청약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하며, 청약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4.28.>

제15조(청약의 철회)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의 청약철회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납한 청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청약금의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4.28.>

제1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중앙회는 공제계약시 계약자에게 약고나 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말한다.)의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20.11.3>

1. 공제 인터넷(앱)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3.>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부금납입, 납입기간,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3.>

②중앙회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금을 반환하며, 부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4.28.>

제16조의2(계약의 무효)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는 계약을 무효로 보아 해지하며 납부한 부금을 반환한다. 단, 중앙회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절하지 않은 경우 부금을 납입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7.20.>

1. 계약 청약일 당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2. 계약 청약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
3. 계약 청약일 당시 제13조의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제 2 절 공 제 부 금

제17조(부금월액) 부금월액은 10,000원 단위로 하여 최저 50,000원으로 하되, 최고액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7.>

제18조(부금의 납부) ①계약자는 부금월액 또는 매 분기의 부금액을 부금납부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금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부금납부기일로 한다. <개정 2008.4.28.>

②부금월액(부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부금액)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개정 2008.4.28.>

③계약자는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8.4.28.>

제19조(부금월액의 변경) ①계약자가 부금월액의 증액을 신청한 경우 중앙회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계약자가 부금을 3개월분 이상 납입한 후 사업경영의 악화 등을 사유로 부금월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중앙회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3., 2008.4.28.,

2010.2.8., 2013.2.7.>

제20조(부금납부의 중지) ①중앙회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금납부 중지기간” 동안 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재해
2. 입원치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의 계속 등 요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제1항의 부금납부 중지기간은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개월, 동항 제3호의 경우에는 요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5.]

제21조(부금의 통산) ①중앙회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의 통산신청을 한 때에는 전 계약의 부금을 후 계약의 부금으로 통산한다. 이 경우 전 계약은 소멸한다. <개정 2008.4.28., 2016.12.7(시행일 2017.1.1)>

1. 제2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 <개정 2008.4.28.>
2.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공제사유

②제1항의 부금의 통산신청과 동시에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0.2.8.>

③제1항에 의한 부금통산 신청시 전 계약의 부금납부를 연체하지 않아야 한다. 단, 연체된 부금을 일괄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관련 법에 따른다. <신설 2011.12.6.>

④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납부한 부금이 있을 경우 제25조에 불구하고 후 계약의 부금으로 통산한다. <신설 2011.12.6.>

[제목개정 2008.4.28.]

제22조(부금선납) ①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해당 연도분의 부금을 부금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부금납부일 이전에 선납하는 부금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7.>

② 삭제 <2008.1.9.>

②제1항의 선납부금 중 제26조제3항 또는 제29조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잔여부금의 반환은 제25조 사후부금 반환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3.2.7.>

제23조 삭제 <2008.4.28.>

제23조(부금연체의 통지) ①중앙회는 계약자가 일정기간 부금을 연체한 경우 또는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강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그 연체 사실 또는 계약해지(예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회는 계약자가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하며,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동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4.28.][전문개정 2014.12.10.]

제24조 삭제 <2014.12.3.>

제25조(사후부금의 반환) 중앙회는 계약자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사유 또는 제29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에 납부한 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제목개정 2008.4.28.]

제 3 절 계 약 의 해 지

제26조(계약해지) ①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24개월분 이상 연체한 때 <개정 2008.4.28., 2025.2.28.>

2. 계약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때

③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간주해약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5.>

1.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2.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때 <개정 2008.4.28.>

제26조의2 (부금 장기미납자의 정상계약전환)

① 부금의 납부를 12개월분 이상 연체한 자는(이하“부금 장기미납자”)“정상계약전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부금 1회분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을 정상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삭제 <2025.2.28.>

③ 정상계약으로 전환 시, 계약자의 미납이력은 소멸한다.

④ 계약자는 제 1항에 따라 정상계약전환을 신청할 때에 부금월액을 새로이 정

할 수 있고, 기존의 부금월액보다 감액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이를 승낙한다. [본조신설 2021.6.29]

제27조(해약환급금) ①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②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25.>

1.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표 3>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제1란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제2란에 기재된 금액 <개정 2008.4.28.>
2.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80% <개정 2008.4.28.>
3. 제26조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간주해약환급금 <개정 2008.4.28.>

③제2항제3호의 간주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8.>

1. <별표 2>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제1란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금액 <개정 2008.4.28.>
2. 부가공제기준일(제1회차부터 제3회차까지의 부가공제기준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26조제3항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금액(이하 “가정간주해약환급금”이라 한다)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개정 2008.1.9., 2008.4.28.>

④중앙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해약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4.28.>

제28조(해약환급금의 지급방법) 해약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 5 장 공 제 금

제29조(공제사유) ①중앙회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단, 제5호 내지 제8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요청 시 공제금의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를 허용한다. <단서신설 2024.5.9.>

1. 폐업(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는 그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다만,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사망
3.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4.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설 2024.5.9.>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 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설 2024.5.9.>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설 2024.5.9.>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계약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설 2024.5.9.>

②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사업자에 한한다)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폐업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28.>

제30조(공제금) ①중앙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8.>

1.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제1란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금액, 동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표 제1란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3란에 기재된 금액 <개정 2008.4.28., 2024.5.9.>
2. 부가공제기준일에 제29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금액(이하 “가정구분공제금”이라 한다)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개정 2008.1.9., 2008.4.28.>

① 삭제 <2008.4.28.>

②제1항제2호의 부가지급률은 매년마다 가정공제금의 총액, 공제자금의 운용 수입액·예상액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전년도말까지 중앙회 회장이 정하며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08.4.28.>

제31조(공제금의 지급) ①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업무에 관한 절차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29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4.28.>

제32조(공제금의 분할지급)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4.28.>

1.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미상환대출금 공제후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개정 2017.7.20.>
2. 계약자에게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개정 2008.4.28.>
- ②계약자가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제1항의 청구는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이하 “분할지급대상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③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매월,분기,반기 또는 년에 계약자가 지정한 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지정한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 <개정 2013.2.7., 2017.7.20.>
- ④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기간(이하 “분할지급기간”이라 한다)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 후 최초의 분할지급월로부터 5년, 10년, 15년 또는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7.7.20.>
- ⑤분할공제금은 공제금(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대상액)을 분할지급횟수로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하며,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4.28.>
- ⑥제1항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금 전액에서 분할지급대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33조(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 ①중앙회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잔여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1.25.>

1. 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계약자가 잔여 분할공제금의 일괄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계약자
<개정 2017.7.20.>
- ②제1항의 잔여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상의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4.28.>
[전문개정 2008.1.9.]

제34조(대표자의 지정) 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지급금·반환금을 지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권자”라 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급권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9.>

제35조(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는 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한다.<개정 2008.1.9., 2008.4.28., 2024.5.9.>

② 삭제 <2008.1.9.>

제36조(결격) ①고의의 범죄행위로 계약자를 사망하게 한 자는 제33조 및 제35조에 불구하고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계약자의 사망 전에 그 사망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를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망하게 한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9.>

②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자가 제1항의 범죄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제37조(공제금 등의 반환) 중앙회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해당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공제금 등의 상계) 중앙회는 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반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에 대한 공제계약대출금 및 기타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반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7.7.20>

제39조(기준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 이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이하 “기준이율”이라고 한다)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②기준이율은 「매 분기 초일」에 정하여 매 3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하여 기준이율과의 금리차가 현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기간 중에도 기준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③기준이율의 최저한도(이하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한다)는 중앙회 회장이 정한다.

④중앙회는 기준이율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39조의2(무등록사업자 특례) ①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무등록 소상공인”이 중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 제29조제1항의 “폐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2.3.]

제6장 준비금 및 자산운용

제1절 준 비 금

제40조(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장래 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마다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재적중인 계약에 대하여 결산기에 제29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30조에 따라 산출한 공제금 <개정 2008.1.9., 2008.4.28., 2024.5.9.>
2.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 <신설 2014.12.3.>
3.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의 지급

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 <호변변경 2014.12.3.>

② 삭제 <2008.4.28.>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은 채적중인 계약에 대하여 결산기에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공제금과 동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공제금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08.4.28., 2024.5.9.><호변변경 2008.4.28.>

③제1항제3호에 따른 준비금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준비금의 4%를 한도로 하여, 매 당해 사업연도 잉여금의 5분의 1이내에서 적립한다. <신설 2014.12.3.>

④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직전년도 자본총액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매 당해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1이상을 결손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신설 2014.12.3.>

제2절 공제자산의 운용

제41조(자산운용의 원칙) ①공제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4.28.>

제42조(공제자산의 구분) ①공제자산은 부금 및 그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자산(이하 “준비금자산”이라 한다)과 부금 이외의 자금으로 조성된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그 운용은 통합하여 한다.

②운영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사용한다.

1. 기타자산

2. 준비금자산

[본조신설 2008.4.28.]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공제자산은 금융시장 상황 및 자금수지 예측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운용한다. <개정 2008.11.25.>

1. 예치금
2. 금전신탁
3.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0.12.9.>
4. 삭제 <2010.12.9.>
5. 공제계약대출
6. 삭제 <2021.12.2.>
7. 부동산의 취득·처분·임대 및 기타 이용
8.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운용범위 <개정 2014.12.3.>

②자산운용의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운용요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10.>

[본조신설 2008.4.28.]

제44조(자산운용담당 임직원의 의무와 면책) ①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개정 2013.12.10.>

1. 관계법령, 공제자산 운용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2. 공제자산의 운용 관련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
3.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및 관련 기록의 보관·유지
4.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공제자산의 운용 금지 및 해당사항 발견시 책임자 보고
5. 공제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품 및 향응 등의 수수 금지

②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8.4.28.]

제45조(자산운용계획의 수립) ①중앙회는 매 사업년도의 공제자산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제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산종류별 배분계획 및 투자비중 허용 범위
3. 자산종류별 목표수익률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자산종류별 배분계획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비중 허용범위 내에서 조정·배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4.28.][전문개정 2013.12.10.]

제45조의2(위험관리) ①공제자산의 위험관리는 관련 법 및 규정과 제41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제자산의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관해서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주요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개발 및 보완 등을 하여야 한다

⑤위기(투자한 자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급락하거나 회수가 어려운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말함)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여러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위기상황이 발전·심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제45조의3(성과평가) ①공제자산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제자산운용의 개선 발전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의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성과평가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10.]

제46조(위원회의 설치) ①중앙회는 공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자산운용위원회
2. 대체투자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②공제자산운용에 있어서 투자의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중앙회 회장은 실무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8.4.28.][전문개정 2013.12.10.]

제46조의2(자산운용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제자산운용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
3. 연간 및 분기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호변변경 2014.12.3.>
4.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호변변경 2014.12.3.>
5.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호변변경 2014.12.3.>

[본조신설 2013.12.10.]

제46조의3(대체투자위원회)①대체투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대해 심의한다.

1. 기본적인 대체투자 정책에 관한 사항
2. 대체투자의 타당성 및 투자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3조 제1항 제7호 부동산의 취득·처분·임대 및 기타 이용
4. 기 투자사업 중 투자환경 급변 등으로 투자의 안정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14.12.3.>
5. 기타 대체투자와 관련한 중요사항으로서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호변변경 2014.12.3.>
[본조신설 2013.12.10.]

제46조의4(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리스크한도 설정·관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리스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위기상황에 대비한 긴급대책의 수립
6. 기타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으로서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본조신설 2013.12.10.]

제7장 공제계약대출

제47조(대출운용원칙) ①공제계약대출은 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②공제계약대출은 무담보·무보증으로 운용한다.

[조변변경 2008.4.28.]

제48조(대출자격)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5., 2011.12.6., 2017.7.20>

[조변변경 2008.4.28.]

제48조의2(대출종류) ①공제계약대출의 종류에는 일반대출, 의료·재해·희생·파산 대출이 있다. <개정 2023.9.26.>

②제1항에 의한 대출의 한도 및 조건 등 요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3.]

제49조(대출 한도) ① 공제계약대출의 한도(이하 “대출총한도”라 한다)는 대출신청일에 제26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총한도는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1.25., 2014.12.3.(시행일 2015.4.1.), 2020.11.3.>

② 종류별 공제계약대출의 한도는 대출총한도의 범위내에서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3.>

③ 공제계약대출금은 10만원 단위로 한다. <개정 2010.12.9.> <항변변경 2020.11.3.>

[조변변경 2008.4.28.]

제50조(대출조건) ① 공제계약대출의 기간(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대출종류에 따라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

② 대출기간 중 계약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 중 계약자는 제48조의 대출자격을 갖춘 경우 기존 대출에 더하여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기존 대출에 더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완납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과 추가 대출을 합산하여 신규 대출로 처리한다.

⑤ 계약자가 기존 일반대출에 더하여 추가로 받는 일반대출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신규 대출로 처리한다. <신설 2020.11.3.>

⑥ 계약자가 기존 일반대출에 더하여 추가로 받는 의료·재해·희생·파산대출 또는 계약자가 기존 의료·재해·희생·파산대출에 더하여 추가로 받는 의료·재해·희생·파산대출 등은 별도 대출로 처리한다. <신설 2020.11.3.> <개정 2023.9.26.>

⑥ (삭 제)

⑦ 중앙회는 제26조제2항의 계약해지 또는 제53조제1항제3호내지제7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절차 등은 요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0. 2020.11.3><항변변경 2020.11.3.>

[조변변경 2008.4.28.] [전문개정 2014.12.3.(시행일 2015.4.1.)]

제50조의 2(이자) ①공제계약 일반대출의 이율은 「기준이자+연3%」 범위 내에서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

② 공제계약 일반대출의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 납부일”이라고 함)에 납부한다. <개정 2020.11.3.>

③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10.>

④공제계약자가 공제대출금 대출금 이자를 해당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하 “미납이자”라 한다) 다음 기준에 따라 다음 월의 대출이자를 부과한다. (단, 공제계약대출원금은 변동없음)

1. 계산식: (대출원금+미납이자)×이자율

⑤이자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

⑥계약자가 약정한 이자납부일에 대출금 이자를 이체하지 않아 이자가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이자와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이자 순으로 다음 이자납부일에 재 청구한다.

⑦이자는 계약자가 자동이체 신청한 공제거래계좌로부터 부금납부기일에 중앙회가 이체처리는 것으로 하며 거래계좌의 잔액부족 등으로 이자납부일에 이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체 처리한다.

⑧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시까지 공제계약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공제계약대출원리금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점에 공제계약대출원리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는 수취하지 않는다.

<신설 2016.12.7.(시행일 2017.1.1)>

⑨공제계약 일반대출이외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등 기타 대출의 이율은 별

도 요령으로 정한다. 단 이 때의 이율은 일반대출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11.3.> <개정 2023.9.26.>

[본조신설 2014.12.3.(시행일 2015.4.1.)]

제51조 삭제 <2014.12.3.(시행일 2015.4.1.)>

제52조(변제충당순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납이자, 대출금 및 기타 비용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한다.

<개정 2014.12.3.> [조변변경 2008.4.28.(시행일 2015.4.1.)]

제53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계약자는 중앙회에 대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4.12.3.(시행일 2015.4.1.), 2017.7.20>

1.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개정 2008.11.25.>

2. 제29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

3. 공제대출금 원리금 합계액이 제26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때

5.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때

6. 삭제 <2013.12.10.>

7. 제16조의2에 따라 계약의 무효가 된 때 <신설 2017.7.20.>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4.12.3.(시행일 2015.4.1.), 2017.7.20>

[조변변경 2008.4.28.]

제 8 장 회 계

제54조(회계원칙)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계정의 계산은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표의 기표금액은 원단위로 하며, 1원미만은 절사한다.

③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계상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미실현수익은 계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제의 회계처리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변변경 2008.4.28.]

제55조(회계연도) 공제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변변경 2008.4.28.]

제56조(준용) 공제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예산회계규약을 준용한다.

[조변변경 2008.4.28.]

제 9 장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제5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중앙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2. 위촉위원

③ 공제사업단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동항 제2호의 위촉위원은 공제·

보험·금융·법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로 한다.

④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변변경 2008.4.28.]

제58조(위원장) 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변변경 2008.4.28.]

제59조(분쟁조정신청) ①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이하 이 장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내용이 요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의권고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조변변경 2008.4.28.]

제60조(심의 및 조정) ①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조변변경 2008.4.28.]

제61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60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 그 조정결정 및 합의내용은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맞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28.>

[조변변경 2008.4.28.]

제62조(심의의 중지) 위원장은 신청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심의·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조변변경 2008.4.28.]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조변변경 2008.4.28.]

제 10 장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제64조(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중앙회는 공제가입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제도개선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이하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2.9.1.>

1. 중앙고객권익보호위원회<개정 2022.9.1.>
2. 중앙회 각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지역고객권익보호위원회<개정 2022.9.1.>

③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9.1.>

1. 공제사업단장(지역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경우 중앙회 지역본부장)<개정 2022.9.1.>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
3. 중소기업·공제·보험·세무·노무·금융·법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9.1.>

⑤제3항제2호내지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29]<개정 2022.9.1., 2024.5.9.>

제65조(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객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고객 관점에서의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6.29]

제66조(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운영)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29]

제11장 정보공개

제67조(정보공개) ①중앙회는 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제자산의 운영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수 있도록 공제자산 운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다만, 공제자산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1. 제무제표
2. 제30조 제2항에 따른 부가지급율
3. 제39조에 따른 기준이율
4. 운용요강
5. 자산운용지침 <신설 2014.12.3.>
6. 공제자산 운용과 관련된 규정 <호변변경 2014.12.3.>
7. 공제자산 적립현황, 운영현황 <호변변경 2014.12.3.>
8. 대내외 평가 및 내·외부 감사결과 <신설 2021.12.2.>
9.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현황(주요 회의록, 고객만족도·청렴도 조사 결과,

공제금 지급·해지·대출현황) <신설 2021.12.2.>

10. 위탁 운용사 선정기준 <신설 2021.12.2.>

11. 기타 중앙회장 또는 공제운영위원회가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2.>

[본조신설 2013.12.10.][조변변경 2021.6.29.]

제 12 장 보 칙

제68조(단수처리) 공제금, 해약환급금 및 기타 산출 금액에 1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조변변경 2008.4.28., 2013.12.10., 2021.6.29.]

부 칙 <2007. 7. 3.>

이 운용요강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9.>

이 운용요강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3.>

이 운용요강은 200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28.>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금연체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운용요강 시행 전에 종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부금연체이자가 발생한 계약 중 이 운용요강 시행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부금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제3조(해약환급금 및 공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운용요강 시행전에 종전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 중 이 운용요강 시행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11. 25.>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금납부월수, 부금납부의 중지 및 간주해약환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 제20조, 제27조제2항제1호, 동조 제3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운용요강 시행전 종전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서 이 운용요강 시행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기준이율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재적중인 계약자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한 분기 초일부터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0. 02. 08.>

이 운용요강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 3. 3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회 회장이 별도 공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09.>

이 운용요강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0.>

이 운용요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06.>

이 운용요강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07.>

이 운용요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0.>

이 운용요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7 >

이 운용요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자 등에 관한 경과규정)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개

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기존 대출에 대한 기간연장신청 및 신규대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약환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별표3]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는 2015년 1월 1일 계약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비금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 준비금 적립은 2014년도 결산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1.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약환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별표3]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는 2016년 8월 1일 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2. 7.>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금의 통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공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출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8항의 신설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7. 20.>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분할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 이후에 분할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 이후에 잔여 분할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 이후에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7년 9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계약무효의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금 장기미납자의 정상계약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후에 정상계약전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약환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별표3]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는 2021년 8월 1일 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2>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9>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08.11.25., 2024.5.9. 개정>

“공제금 지급기준표”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제1란 (부금납부월수)	제2란 (폐업·사망공제금) (동호 전단 관련)	제3란(노령·퇴임, 자연·사회 재난, 질병부상, 희생파산 공제금) (동호 후단 관련)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 월 수가 1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납 부 부 금	납 부 부 금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 월 수가 7회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차등지급이율표」의 적용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 차등지급 이율표 <table> <tr> <th>번호</th><th>적용(부리)기간</th><th>적용이율</th></tr> <tr> <td>1.</td><td>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td><td>기준이율+ 연 0.3%</td></tr> <tr> <td>2.</td><td>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25%</td></tr> <tr> <td>3.</td><td>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2%</td></tr> <tr> <td>4.</td><td>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15%</td></tr> <tr> <td>5.</td><td>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1%</td></tr> <tr> <td>6.</td><td>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td><td>기준이율+ 연 0.05%</td></tr> <tr> <td>7.</td><td>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td><td>기준이율</td></tr> </table>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연 0.3%	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연 0.3%																								
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별표 2> <2008.11.25. 개정시행>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제27조제3항제1호 관련)

제1란 (부금납부월수)	제2란 (간주해약환급금)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회 이상 36회 이하인 경우	납 부 부 금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37회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 해약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 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하 이 표에서 “부리공백기간”이라 한다)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공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함.

<별표 3> <2017.12.11. 개정, 2018.1.1. 시행, 2021.06.29 개정, 2021.8.1. 시행>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부금 납부 월 수	일반해약환급금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회 이상 3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80.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90.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7회 이상 60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61회 이상 72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4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73회 이상 120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21회 이상 180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부금납부월수	일반해약환급금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81회 이상 240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80%
계약을 해지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241회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의 100.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95%

<별표 4> <개정 2008.1.9., 2017.7.20>

“기타 지급이율표”

구 분	적용(부리)대상	적 용 기 간		적용이율
청약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제14조제5항 관련)	청 약 금	청약금을 받은 기간		기준이율
청약철회신청을 한 경우 (제15조제2항 관련)	청 약 금	청약철회 신청을 받은 후 청약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		기준이율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단서조항 관련)	부금납부액	부금을 받은 기간		기준이율
간주해약사유 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계속 부금을 납부한 경우 (제25조 관련)	사후부금액	사후부금액을 받은 기간	1년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초과	기준이율의 1/4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7조제4항 관련)	해약환급금	해약일의 다음 날부터 해약환급금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1년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초과	기준이율의 1/4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연 1%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제3항 관련)	공 제 금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초과	기준이율의 1/4
		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32조제5항 관련)	분할공제금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초과	기준이율의 1/4
		분할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분할공제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지급 월이 미 도래한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33조제2항 관련)	잔 여 분할공제금	분할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직전 분할공제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직전 분할공제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의 1/2
		일괄지급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별표 5> <2011.2.10. 개정시행>

“수 취 이 율 표”

구분	적용(부리)대상	적용기간	적용이율
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제50조제2항 관련)	대 출 금	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대출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3.0%」의 범위 내 에서 중앙회 회장이 정함
대출금상환을 연체한 경우 (제51조 관련)	연체대출금	대출금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5.0%」의 범위 내 에서 중앙회 회장이 정함